

### 3.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소송제기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이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및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상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료열람요구권은 2021년 9월 25일 이후 계약을 체결(권유)한 자료부터 적용됨
열람가능 자료	계약체결 관련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신설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자료열람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기타 금융위 고시 자료
처리기한	자료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8일(캘린더 데이)이내에 고객에게 열람가능여부를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영업점 방문), 대리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자료열람요구서, 실명확인증표,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증빙서류
제한·거절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li><li>·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침해의 경우</li><li>·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한 경우</li><li>· 개인정보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li>·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명백한 관련이 없는 경우</li><li>·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등</li></ul> <p>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자료열람 가능하도록 한다.</p>